

계룡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

의안 번호	72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2003. 11. 10.

제안자 : 김 정순 의원외 2인

1. 제안이유

- 계룡시의회 의원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,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.

2. 주요골자

- 적용범위(안 제2조), 신분증 규격, 제식 및 색상(안 제3조), 신분증의 발급권자(안 제4조),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(안 제5조), 신분증의 반납 등(안 제6조)을 규정함

3. 참고사항

계룡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계룡시의회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(이하 “신분증”이라 한다)의 규격,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 규칙은 계룡시의회의 의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 (신분증 규격, 제식 및 색상) ①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,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, 그 규격,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.

②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.

제4조 (신분증의 발급권자) 신분증은 계룡시의회의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발급한다.

제5조 (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)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.

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.

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 (신분증의 반납 등)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.

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→ 5.0cm ← → 5.0cm ← 의 원 신 분 증 신분증번호 : 성 명 : 계 룡 시 의 회	계룡시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: 주민등록번호 : 위 사람은 계룡시의회 의원임을 증명함. 년 월 일 계 룡 시 의 회 의 장
(전 면)	(후 면)

- (주) 1. 사진규격등
- ① 사진(4cm×5cm)
 - ② 성명(흑색모필로 기입할 것)
2.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글자의 구분	글자의 크기	글자의 종류
지방의회의 신분증	16 포인트	고 덕 체
발 급 기 관 장	15 포인트	고 덕 체
상기자는.....증명함	13 포인트	고 덕 체
성 명, 주민등록번호	13 포인트	고 덕 체
기 타	10 포인트	고 덕 체

- 3. 지질은 인쇄용지 190 g/m²으로 한다.
- 4. 신분증은 P.V.C(투명한 것)으로 포장한다.
- 5.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집계하여 옷깃에 달 수 있게 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신분증발급대장

결재란	신분증 번호	발 급 년월일	성명	주민등 록번호	신 규 재발급	회수 여부	재발급 사 유	반환	사진	비고

[별지 제2호서식]

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

1. 성 명
2. 주민 등 록 번 호
3. 신 분 증 번 호
4. 재발급신청사유

첨부 : 사진 2매

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인)